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2배(현행 1.5배)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(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은 정)